

[2023. 1.]



지혜마루 이용정보 안내

「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」



I

기관 안내

1 시설구분

- 노인재가복지시설(여수시치매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지혜마루)

2 기관현황

- 기 관 명 : 지혜마루
- 운영법인 :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
- 소 재 지 : 전남 여수시 소라면 서부로 390-1 (☎ 061) 682 - 9980
- 시설규모 : 건물연면적 498.82㎡(지상 2층)

3 목 적 - Vision

- 어르신 삶의 지혜를 모아 터무늬를 존중하는 일상을 만들어갑니다.

4 목 표 - Mission

- 어르신의 익숙한 일상생활을 영위합니다.
- 어르신의 입맛에 맞는 식사를 드립니다.
- 어르신의 생활공간을 존중합니다.
- 어르신과 그 가족의 안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거점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합니다.

5 운영방침

- 가정과 같은 생활 서비스 제공
- 어르신의 자존능력 유지 및 향상
- 지역 주민과의 교류 추진

6 원 훈

고품격 서비스로 어르신과 가족에게 감동을 주는 지혜마루

7 입소정원

- 정원 : 45명 / 현원 : 20명

8 조직도·직원현황



원장	사회 복지사	간호 (조무)사	요양 보호사	운전원 (보조원)	계
1	1	2	2	1	7

9 주요시설 현황

<본 관>

- 1층 : 생활실, 사무실, 프로그램실
- 2층 : 생활실, 프로그램실, 주방

Ⅱ

운영규정 개요

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

1. 서비스이용자 정원은 주야간보호 : 45명(치매전담 25명 + 일반 20명).
단 인지지원등급자는 정원의 3명 (10% 범위) 까지 정원외로 받을 수 있다.
2. 서비스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센터 홍보
 - 전화상담, 인터넷상담 후 방문 및 내방
 - 자체 홈페이지 및 블로그 제작
 - 기존 이용자의 지인소개
 - 신문전단 및 음식물 배달업체를 통해 센터홍보전단지 배포홍보
 - 현수막을 통한 지역사회 홍보
 - 아파트 게시판, 관공서 등 지역사회 홍보
 - 교차로,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광고

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목적

센터는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이용자 및 그 가족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고 공유하여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.

2. 계약기간

- ①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.
- ② 이용수급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.
- ③ 등급변경, 계약기간 종료,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.
- ④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
3. 비용안내

- ▷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[본인부담금 0 %] + 비 급여 부담금.
- ▷ 의료수급권자, 기타 감경대상자 [본인부담금 9 % 혹은 6%] 비급여 부담금.
- ▷ 일반대상자 [본인부담금 15 %] + 비급여 부담금.

◎ <일반실 : 8시간 ~ 10시간 / 월 20일기준>

구분	급여비용			비급여항목		본인 부담금 합계
	부담률	본인 부담금	1일 이용비	식비 2식 (2,500원/1식)	간식비 (1,000/일)	
3등급	15%	165,240	8,262	100,000	20,000	285,240
	9%	99,144	4,957			219,144
	6%	66,096	3,305			186,096
4등급	15%	160,740	8,037	100,000	20,000	280,740
	9%	96,444	4,822			216,444
	6%	64,296	3,215			184,296
5등급	15%	156,150	7,808	100,000	20,000	276,150
	9%	93,690	4,685			213,690
	6%	62,460	3,123			182,460

◎ <치매전담실 : 8시간 ~ 10시간 / 월 20일기준>

구분	급여비용			비급여항목		본인 부담금 합계
	부담률	본인 부담금	1일 이용비	식비 2식 (2,500원/1식)	간식비 (1,000/일)	
3등급	15%	207,840	10,392	100,000	20,000	327,840
	9%	124,704	6,235			244,704
	6%	83,136	4,157			203,136
4등급	15%	202,200	10,110	100,000	20,000	322,200
	9%	121,320	6,066			241,320
	6%	80,880	4,044			200,880
5등급	15%	196,410	9,821	100,000	20,000	316,410
	9%	117,846	5,892			237,846
	6%	78,564	3,928			198,564

◎ 비 급여 항목

- ▷ 식사 재료비, 간식비
- ▷ 이·미용비(개별 서비스 제공 시)
- ▷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.

4. 계약서류

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

-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.
-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.
- 서비스이용대상자 진단서(병명이 기재된 것) 1부.
- 서비스이용대상자 검진서(전염성 질환여부 - 결핵, 간염, 성병 등) 또는 의사소견서 1부.
- 서비스이용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.
- 서비스이용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.
- 서비스이용대상자 및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.

5.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“을”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(단, 병원입원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.)
- “을”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.)
-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성실한 서비스 제공 의무

6. 입소자의 의무

-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-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-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7. 입소자의 권리

-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,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
- 자유로운 종교와 문화 활동 권리

8. 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

-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신원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.
-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.
-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계획,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.

9.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

- 수급자(보호자) 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-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(보호자)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

10. 기타 수급자(보호자)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-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(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-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
-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-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-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- 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
-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
- 임원을 하였을 때 단,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였을 때

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1.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 -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 -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 -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
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1.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 - 이용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미, 교양, 치료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며, 입소자가 요청하는 생활전반과 인간관계, 재산관리 등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,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.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.
 - 단,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

1.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
 -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.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%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.

- 수급자의 신체적,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 및 유선 통지를 통해 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기록지에 그 사유를 상세히 기록한다.

6.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

1. 간호(조무)사의 활동사항

- 간호(조무)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.
-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, 체중, 혈압, 체온,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간호(조무)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- 간호(조무)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촉탁의사 및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
2. 촉탁의사 및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

- 촉탁의사 및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방문하여 입소어르신 건강상태를 확인한다.
- 촉탁의사 및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의 입소어르신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(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)를 취한다.
- 촉탁의사 및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의 입소어르신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촉탁의사 및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의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.

3.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

- 입소어르신의 건강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,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4.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

- 병원진료 전에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.
-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5.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

-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의료기관 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
-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,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.

6.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

- 협약의료기관 외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.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자가 부담한다.
-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.

※이용어르신의 병원진료(정기, 수시)시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함.

7.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

-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할 수 있다.
-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.

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

1.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

- 입소어르신 및 입소어르신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오손,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.
- 입소어르신은 위험물(가스, 라이터, 인화·폭발성 물질 등) 소지하면 안된다.
- 입소어르신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 내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해서는 안된다.

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·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

1.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

- 다음에 해당될 때 시설에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.
-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.
-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, 성희롱 등의 행위.
- 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.

2.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

-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
※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입소계약서에 의한다.

9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

1.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(위원회의 구성)

-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센터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센터의 장

2. 센터 이용자 대표

3.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

4. 센터 종사자의 대표

5. 해당 시·군·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6.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
7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
※ 공익단체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
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 제2항 제6호 참조) <신설 2018.03.21.>

8. 기타 센터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※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·운영하는 사회복지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할 것(법제처 해석, 17-0433) <신설 2018.03.21.>

-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.

10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

1.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

(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)

- 이 규정의 변경은 센터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 단, 법인이사회 회의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법인의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.
-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할 수 있다.